

과징금 납부통지서
(수납기관보관용)

① 발 행 번 호		
② 납 부 자	성 명 (대표자)	
	주 소 (회사명)	
③ 위 반 일 자		
④ 위 반 행 위		
⑤ 납 부 금 액		
⑥ 납 부 기 한		
⑦ 납 부 장 소		
「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년 월 일 시·도지사 직인 수납인		

과징금 영수확인통지서
(시·도보관용)

① 발 행 번 호		
② 납 부 자	성 명 (대표자)	
	주 소 (회사명)	
③ 위 반 일 자		
④ 위 반 행 위		
⑤ 납 부 금 액		
⑥ 납 부 기 한		
⑦ 납 부 장 소		
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(인) 시·도지사 귀하 수납인		

과징금 납부영수증
(납부자보관용)

① 발 행 번 호		
② 납 부 자	성 명 (대표자)	
	주 소 (회사명)	
③ 위 반 일 자		
④ 위 반 행 위		
⑤ 납 부 금 액		
⑥ 납 부 기 한		
⑦ 납 부 장 소		
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(인) 시·도지사 직인 수납인		